

■ 목 차

■ 해외업무 사례 ■

[중국] 한국 물류기자재 업체를 대리하여 중국법인에 대한 지분참여 관련 자문.....2  
 한국 진단시제 제조업체를 대리하여 중국합자법인 설립 관련 자문 .....2  
 한국 본사를 대리하여 중국 자회사의 구조 조정 관련 자문.....3  
 한국법인을 대리하여 중국 합자회사의 지분양수도 분쟁 관련 자문 .....3  
 한국 물류회사의 중국 자회사를 대리하여 미수금 분쟁 관련 자문 .....4  
 한국계 은행을 대리하여 중국 채무자의 기계설비에 대한 저당권 설정 관련 자문.....4  
 한국법인의 중국 자회사에 대한 구조조정, 청산 등 업무 관련 자문.....5  
 [베트남] 현대알루미늄비나를 대리하여 호치민 '더 랜드마크 81' 빌딩 커튼월 외장공사 수주계약 자문.....6  
 화승엔터프라이즈의 베트남법인을 대리하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자문 .....6  
 [라오스] KB캐피탈 및 KB국민카드를 대리하여 코라오그룹의 라오스 리스업 진출에 대한 합작투자 자문..8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최고급 리조트인 Alila 체인 리조트의 운영사이자 인도네시아 상장법인인 부바(PT BUVA)를 대리하여 투자 유치 자문.....9

■ 해외업무 논단 ■

[중국]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중 보전 조치에 대한 사법해석 발표.....10  
 [베트남] 우선주 발행을 통한 베트남 기업 투자.....13

■ 최신 해외정보 ■

[중국] 2017년부터 해외 NGO 관리법 시행 .....17  
 「민반교육촉진법」 개정, 의무교육 단계에서의 영리성 학교 설립 금지 .....17  
 기업 관련 등기제도 개혁 가속화.....18  
 [일본] 2016년 11월 15일 일본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 2020미래개척부회 중간보고서 공표.....19

■ 해외업무 사례 - 중국 ■

## 한국 물류기자재 업체를 대리하여 중국법인에 대한 지분참여 관련 자문

지평은 한국 물류기자재 업체를 대리하여 중국법인에 대한 지분참여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상준 변호사    김옥림 외국변호사

## 한국 진단시제 제조업체를 대리하여 중국합자법인 설립 관련 자문

지평은 한국 진단시제 제조업체를 대리하여 중국합자법인 설립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태현 변호사    김옥림 외국변호사

## 한국 본사를 대리하여 중국 자회사의 구조 조정 관련 자문

지평은 한국 본사를 대리하여 중국 자회사의 구조 조정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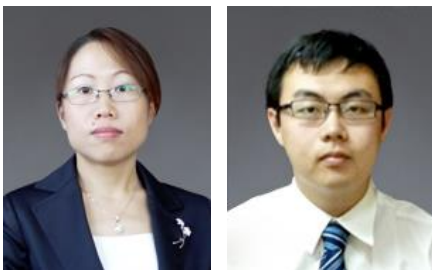


정철 변호사 김옥림 외국변호사

## 한국법인을 대리하여 중국 합자회사의 지분양수도 분쟁 관련 자문

지평은 한국법인을 대리하여 중국 합자회사의 지분양수도 분쟁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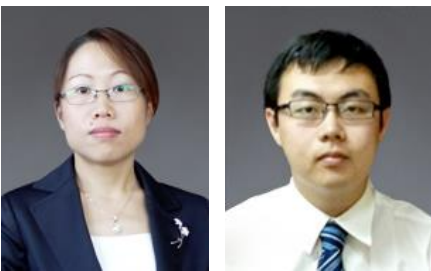


경영동 외국변호사 장욱염 외국변호사

## 한국 물류회사의 중국 자회사를 대리하여 미수금 분쟁 관련 자문

지평은 한국 물류회사의 중국 자회사를 대리하여 미수금 분쟁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경영동 외국변호사 장욱염 외국변호사

## 한국계 은행을 대리하여 중국 채무자의 기계설비에 대한 저당권 설정 관련 자문

지평은 한국계 은행을 대리하여 중국 채무자의 기계설비에 대한 저당권 설정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경영동 외국변호사 채광호 외국변호사

## 한국법인의 중국 자회사에 대한 구조조정, 청산 등 업무 관련 자문

지평은 한국법인의 중국 자회사에 대한 구조조정, 청산 등 업무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최정식 변호사 ·  
상해 사무소장

채광호 외국변호사

■ 해외업무 사례 - 베트남 ■

## 현대알루미늄비나를 대리하여 호치민 '더 랜드마크 81' 빌딩 커튼월 외장공사 수주계약 자문

지평은 현대알루미늄비나를 대리하여 호치민 '더 랜드마크 81' 빌딩 커튼월 외장공사 수주계약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한국일보 - 알루코 그룹 현대알루미늄, 호치민 초고층 빌딩 커튼월 공사 수주\(2016. 11. 14.\)](#)
- [EBN - 현대알루미늄, 호치민 랜드마크 빌딩 커튼월 공사 수주\(2016. 11. 15.\)](#)

[담당 변호사]



심희정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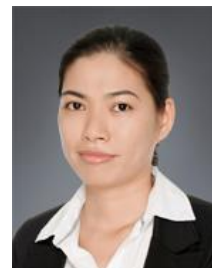
정정태 변호사 · 호치민시티 사무소장



신주연 변호사



BUI Tran Dang Khoa  
외국변호사



TRAN Thi Phuong  
Trang 외국변호사



최규철 전문위원

## 화승엔터프라이즈의 베트남법인을 대리하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자문

지평은 화승엔터프라이즈의 베트남법인을 대리하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윤영규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정정태 변호사 · 호치민시티 사무소장



이은영 변호사



반정현 변호사



BUI Tran Dang Khoa  
외국변호사



TRAN Thi Phuong  
Trang 외국변호사

■ 해외업무 사례 - 라오스 ■

## KB캐피탈 및 KB국민카드를 대리하여 코라오그룹의 라오스 리스업 진출에 대한 합작투자 자문

지평은 KB캐피탈 및 KB국민카드를 대리하여 코라오그룹의 라오스 리스업 진출에 대한 합작투자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아시아경제](#) - 코라오홀딩스, KB금융그룹과 라오스 합작 리스회사 설립(2016. 2. 4.)

[담당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유정한 변호사



반정현 변호사



반기일 외국변호사



■ 해외업무 사례 - 인도네시아 ■

## 인도네시아 최고급 리조트인 Alila 체인 리조트의 운영사이자 인도네시아 상장법인인 부바(PT BUVA)를 대리하여 투자 유치 자문

지평은 인도네시아 최고급 리조트인 Alila 체인 리조트의 운영사이자 인도네시아 상장법인인 부바(PT Bukit Uluwatu Villa Tbk, "PT BUVA")를 대리하여 250억 원의 투자 유치 관련 주식매매 및 신주인수 계약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더벨 - 대명-도미누스인베스트, 인니 리조트에 250억 원 투자\(2016. 10. 28.\)](#)

[담당 변호사]



권용숙 변호사



최유진 변호사

## ■ 해외업무 논단 - 중국 ■

##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중 보전 조치에 대한 사법해석 발표



(법무법인 지평 장욱염 외국변호사)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16년 11월 8일에 「(민사소송) 보전 조치 관련 사법해석」(이하 '보전 관련 사법해석')을 발표하였는데 해당 사법해석은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보전 관련 사법해석'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은 보전 제도의 운영 실효성을 크게 향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1. 보전 신청 시 담보금액 상한선 명시

중국 민사소송법은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보전 신청 시 법원에 제공할 담보금액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법원 실무에서는 보전 신청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도한 담보 부담은 보전 신청인이 보전 신청 금액을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나아가 최종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부분적 보전의 한계로 강제 집행의 실효성에 큰 타격을 받게 되어, '집행난(執行難)'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번 사법해석은 보전 신청이 피보전 재산의 처분을 제한할 뿐 보전 조치로 재산이 멸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100%의 담보금액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담보금액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단, 시장의 급변 등 예견치 못한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추가 보전 명령을 하여 담보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 보전 책임보험 도입

최근 들어 출현한 보험사의 소송보전보험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이러한 형식의 담보도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해당 사법해석이 시행되기 전에도 일부 법원에서는 이러한 담보제도를 인정하고 있었지만 인정 여부는 순수하게 법원의 재량권에 의존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법해석의 시행으로 소송보전보험의 활성화를 위한 유력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3. 보전 신청 단계에서 법원의 인터넷 강제집행조회통제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

법원의 인터넷 강제집행조회통제시스템은 유효한 판결문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2015년부터 구축된 인터넷 시스템으로 해당 시스템을 통하여 피신청인의 계좌 개설 등 금융정보, 소유 차량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법해석이 제정되기 전에는 보전 단계에서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각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되었으나 해당 사법해석에서는 보전 조치도 강제집행을 위한 조치의 일환인 만큼 보전 신청 단계에서도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해당 사법해석의 시행으로 신청인은 법원에 해당 시스템을 통한 피신청인의 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써 보전 신청인이 자체적으로 피신청인의 재산 상태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단, 현재로서는 해당 시스템이 중국 전역에서 완벽하게 구축된 상태가 아니므로, 특정 법원의 인터넷 구축 상태에 따라 실효성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보전 관련 사법해석'에서는 양육비 청구 사건을 포함한 일부 사건에 대하여서는 담보제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법해석은 보전 신청인의 부담을 크게 줄인 한편 다수의 명시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각 법원의 재량에 따른 보전 제도 운영상 차이도 대폭 줄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 해외업무 논단 - 베트남 ■

## 우선주 발행을 통한 베트남 기업 투자



(법무법인 지평 신주연 변호사)

최근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 베트남이 투자처로 각광을 받으면서 매매 차익 실현 또는 경영 참여 목적으로 베트남 회사에 대한 지분 투자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방법으로 베트남 회사의 우선주를 인수하는 것에 대한 문의도 많습니다.

베트남 기업법에 따라 의결 우선주는 창립주주만 보유할 수 있지만, 배당 우선주, 상환 우선주, 기타 정관에서 정한 우선주는 제3자 배정 방식으로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사모 방식으로 제3자가 우선주를 인수하고자 할 경우, 회사와 투자자 사이의 신주인수계약, 투자자와 기존 대주주 사이의 주주간계약 및/또는 콜/풋 옵션계약 등으로 투자 조건을 정하는 것은 한국에서와 동일합니다. 다만 베트남에서는 주식 인수를 위하여 회사의 투자등록증(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및 기업등록증(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과 같은 인허가 변경을 하여야 하고, 외환거래를 위하여 특수한 계좌를 이용하여야 하는 등 베트남법상 특유한 사항들이 있으므로, 아래 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우선주 종류

베트남 기업법에 따르면, 베트남 주식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우선주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 ① 의결 우선주 : 창립주주만 보유할 수 있고,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유효기간 3년이 경과하면 보통주로 전환됩니다. 의결권의 수는 회사 정관으로 정합니다.
- ② 배당 우선주 : 보통주보다 높은 배당률 또는 연간 확정 배당금(회사 경영 실적과 무관)을 누릴 수 있는 우선주를 의미합니다.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 ③ 상환 우선주 : 계약으로 정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 주주가 요청하는 경우 회사가 해당 주식을 매수(상환)하여야 하는 우선주를 의미합니다. 주식 매각을 위해 새로운 매수인을 찾을 필요 없이 상환권을 행사하여 간편하게 주식을 매각하여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 ④ 기타 정관에서 정한 우선주

배당 우선주, 상환 우선주, 기타 정관에서 정한 우선주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회사 정관 또는 신주발행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단, 배당 우선주 또는 상환 우선주의 주주에게는 의결권, 주주총회 출석권, 이사 및 감사 후보 추천권이 없습니다.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배당 및 상환 외의 다른 사항에 관한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경우, 이러한 우선주도 기타 정관에서 정한 우선주로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보통주는 우선주로 전환될 수 없지만, 우선주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조건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2. 신주 발행 절차

베트남 주식회사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로 기존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주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도, 기존 주주(기존 주주에게서 신주인수권을 양도받은 자를 포함)가 인수하지 않고 남은 주식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당 주주에 대한 발행조건과 같거나 그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다른 주주 또는 제3자에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기업법 및 투자법에 따라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을 제3자(외국인)가 인수하기 위해 진행하여야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 일정은 회사의 정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날 짜	절 차
D - 6	회사의 이사회 소집 통지

D	이사회 결의
D + 1	회사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
D + 12	주주총회 결의 - 우선주의 제3자 발행 - 정관변경: 정관 자본금, 총 주식수, 주식의 종류, 각 종류 주식의 액면가
D + 17	사모 신주 발행 신고 사모 신주 발행 신고 완료(신고일로부터 5 영업일)
D + 23	신주 인수 청약(계약 체결)
D + 24	신주 인수 대금 납입
D + 25	투자등록증(IRC) 변경 신청: 투자금 출자에 관한 사항
D + 40	투자등록증(IRC) 발급
D + 41	기업등록증(ERC) 변경 신청: 자본금에 관한 사항
D + 44	기업등록증(ERC) 발급

### 3. 송금 및 배당 관련 유의 사항

외국인 투자자의 역내 투자, 베트남 기업의 배당금 역외 송금 등의 외환거래를 위하여 베트남 법은 외국환거래 등에 관한 신고를 하는 대신, 직접투자계좌(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 및 간접투자계좌(In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라는 특수한 계좌를 통해서만 자금거래 당사자들 간 송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회사의 지분 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현지 은행에 간접투자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통해서만 주식 인수 대금 납입과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금 등의 자금 수수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투자를 받은 베트남 회사는 현지 은행에 직접투자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통해서만 주식 인수 대금 수수와 배당금 지급 등의 자금 수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주식회사의 우선주를 인수할 경우, 인수 대금은 외국인의 본국 계좌 → 외국인의 베트남 간접투자계좌 → 주식 발행회사의 직접투자계좌로 송금하여야 합니다. 주식 발행회사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당금, 주식상환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역으로 발행회사의 직접투자계좌 → 외국인의 베트남 간접투자계좌 → 외국인의 해외 계좌로 송금하여야 합니다.

베트남 회사는 회계연도 결산 결과 법인세 및 기타 세금 납부 후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적법한 내부절차(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거쳐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고, 그 외에 배당을 제약하는 특별한 베트남 법상 규제는 없습니다. 또한 해당 회사가 베트남에서 법인세를 납부했다면, 배당결정액에 대한 해외 송금 시 원천징수세가 없고, 배당금을 송금받은 외국인 투자자가 본국법에 따라 본국 과세당국에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한편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분양도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에 따라 해당 주식회사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아닌 경우, 주식을 양도하는 한국 투자자는 베트남에서 지분양도세가 면제되고, 대신 한국법에 따라 한국 과세당국에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 ■ 최신 해외정보 - 중국 ■

**2017년부터 해외 NGO 관리법 시행**

2017년 1월 1일부터, 「경외비정부조직경내활동관리법」(이하 '해외 NGO 관리법')이 중국에서 정식 시행됩니다.

해외 NGO 관리법에 의하면 해외 NGO는 경제, 교육, 과학기술, 문화, 위생, 체육, 환경 보호, 빈곤 퇴치, 재난 구조 등과 관련하여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 NGO는 중국 국내에서는 모금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외 NGO 관리법에 의하면 해외 NGO가 중국에서 활동하기 위하여서는 대표기관을 설립하여야 하며公安부서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임시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위 대표기관을 설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 활동은 중국 업체와 협력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기간에 대하여서도 1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公安부서는 해외 NGO를 관리하는 부서로 법 시행에 맞춰 자세한 활동 영역 등을 정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 중에 있으며 또한 해당 법의 시행에 맞춰 NGO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인터넷 사이트도 구축 중에 있습니다.

해외 NGO 관리법의 시행으로 중국 내에서는 해외 NGO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민반교육촉진법」 개정, 의무교육 단계에서의 영리성 학교 설립 금지**

개정 「민반교육촉진법」이 지난 11월 7일에 통과되어, 내년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민반교육촉진법」에서는 9년 의무교육 단계에서 영리성 민반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 개정 「민반교육촉진법」은 비영리성 민영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비영리성 민영학교를 신축 또는 확장하는 경우,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토지를 무상 지원하는 토지사용 관련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세제혜택도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부여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기업 관련 등기제도 개혁 가속화

중국 정부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기업 등기와 관련하여 기존의 영업허가증, 조직기구코드증, 세무등기증을 통합하여 하나의 영업허가증으로 갈음하는 '3증합1(三證合一)' 개혁을 전면 시행한데 이어 올해 10월 1일에는 위 삼증합일에 추가하여 사회보험등기증과 통계등기증을 통합하는 개혁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개혁으로 기업 등기 절차는 한 부의 신청서류로 한 창구에서 일괄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로써 기업 등기를 위한 부담을 한층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 최신 해외정보 - 일본 ■

**2016년 11월 15일 일본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 2020미래개척부회  
중간보고서 공표**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경기대회 개최를 위해 산업구조심의회 2020미래개척부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일본의 2020년 이후 미래상을 검토함과 함께 그 실현을 위한 개혁,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실시에 대해 검토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정리하였습니다.

보고서는 일본이 목표로 해야 하는 미래 모습으로 경제(산업, 경영)와 생활(노동, 교육)에 관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고령화사회를 비롯하여 일본이 직면하는 사회 과제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9개 프로젝트에 대해 현상의 과제, 향후 준비, 2020년까지 로드맵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 9개 프로젝트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빌리티(mobility)**

- ① 차세대 자동차 개발·도입(제도적 대응 포함)
- ② 자율주행으로 실현하는 가치, 어플의 구체화(필요에 따라 제도적 대응도 포함)
- ③ 2020년에 ① 및 ②에 대해 세계 최고 구현을 실시하여 세계에 발신

**2. 스마트 커뮤니티(smart community)**

- ① 스마트 미터를 도입한 쌍방향 전력수급 시스템의 확립
- ② 재생가능에너지, 축전지, 수요 관리기법을 활용한 지역에너지관리의 구현
- ③ 지방과 도시가 일체가 되어 CO<sub>2</sub> free 수소사회 모델 구축

**3. 스트레스 프리(stress free)**

- ① 쇼핑, 면세 절차, 각종 넷 인터넷 예약 등 원스톱화, 다언어·다통화 대응, 사용자 친화적인 결제 등의 국내 체재 환경 정비
- ② 다양한 로봇 활용·연대하여 각종 서비스를 실시하는 현장을 세계에 발신

**4. 사이버 보안(cyber security) 대책**

- ① 사이버 보안 산업의 성장산업화
- ② 정부기관을 비롯하여 전력 등 중요 인프라 보안 대책의 강화
- ③ 가이드라인 등에 의한 전기관 사이버 대책의 실시

**5. 활력 넘치는 빈티지(vintage) 사회**

- ① 초고령화 사회를 지탱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신산업, 시장의 창출
- ② 초고령자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구체적인 사회적 시스템의 구축
- ③ 배리어프리를 확보하는 제품·서비스의 글로벌 전개

**6. 이노베이션**

- ① 새로운 서비스 제공의 애로가 되는 규정 검출
- ② 이노베이션 창출·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틀의 검토
- ③ 이노베이터 발굴과 관련 비즈니스와의 공동작업을 촉진하는 장의 설정

**7. 인베스트먼트**

- ① 런던에서의 노력을 참고하며 대일투자 촉진 체제의 정비

- ② 정치, 비즈니스 탑리더를 포함한 컨퍼런스 실시

## 8. 인재 만들기 · 지방창생(地方創生)

- ① 각 지역 only one(물건만들기/대접)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매력 자원을 세계에 발신
- ② 각 지역의 과제 발견과 해결을 실현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플랜 책정
- ③ 사업성과 계속성을 확보하여 이노베이션에 이어지는 이벤트 모집

## 9. 스포츠 · 문화

- ① 스포츠/문화에 관한 산업 · 시장의 재정리와 사업모델 구축
- ② IT를 사용한 새로운 코칭, 스포츠 · 문화 감상의 신페러다임 창설
- ③ 스포츠 · 문화에 관한 국민의 각층 확대

[출처 : 일본 경제산업성]